

實施權契約의 虛實

—파인애플아이스캔디事件—

特許紛爭에서 損害賠償의 請求는 特許權者가 아닌 專用實施權者라는 獨占的 實施權者도 可能하면 전용실시권자는 權利侵害者로부터 그 침해자가 번 利益金을 고스란히 損害賠償金으로 取得할 수가 있다.

그 例로서 日本의 파인애플아이스캔디事件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實施料를 支拂할 때도 特許권자와 實施契約를 締結하는 時期에 따라 先發企業도 될 수 있고 後發企業으로 처지기로 한다.

日本의 新橋食品加工有限會社는 特許 권자로부터 日本國內 全域의 파인애플아이스캔디 독점실시권, 즉 전용실시권을 1953년에 讓受했다. 이로써 新橋食品은 파인애플캔디의 선 발기업이 되었다.

그로부터 6년뒤인 1959년에 有限會社 栃食이 特許권자의 承諾아래 新橋食品으로부터 栃木縣, 群馬縣, 福島縣등 3個縣외에 栃食과 以前부터 去來關係에 있던 協同乳業(株), 明治乳業(株), 江崎구리코(株)등 3個社에 대해서도 파인애플아이스캔디의 製造販賣權을 護受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新橋食品은 栃食에 대하여 栃木縣등 3個현에 대하여는 제조판매권을 양도했으나 協同乳業등 3개사에는 제조판매권을 양도한 바 없다는 것을 理由로 전용실시권침해의 損害賠償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은 1959년 1월1일부터 1961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에 新橋食品이라면 판매했으리라는 數量을 推算하여 그때 金額으로 891萬圓의 利益金 全額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對해 法院은 原告의 主張을 認定하여 그 전액을 新橋食品에 지불하라고 栃食에 判

決하였다. 물론 栃食은 新橋로부터 栃木縣 등 3개현에 對한 실시권을 양수한 證據가 없었던 것이다.

기업이 參考로 할 것은 新橋食品이 特許권을 買入할 때에는 그 業種이 그리 新통하지가 못했으나 將來性이 있음을 豫見하고 投資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特許권을 갖지않고 제품을 판매하다가 特許침해를 하면 莫大한 企業上의 損害를 보게 된다는 敎訓이다. 특히 파인애플아이스캔디의 경우는 無知가 빛은 代表的인 蒙害케이스라 할만 하다.

新橋가 내놓은 利益, 內容의 計算書는 다음과 같다.

1個當 原價計算書

	原料代	물엿.....	圓	
		사카린		
		파인크랏슈		
		파인잠		
		果汁		
		計	2圓25錢	
	直接費	水道料.....	円	
		電力料		
		重油代		
		計	65錢	
	販賣費等	運賃		
		保管料		
		計	81錢	
		合計	3円98(錢販賣價格 4圓~5圓/個)	

1個當 利益 30錢~1圓2錢

製造可能數	製造內譯	販賣內譯	個當利益	利益合計
1960年		協乳 1,331,600	錢 62	圓 825,592
16,606,270	自家	都賣	—	—
	委託	協乳 14,674,670	30	1,931,991
		都賣 8,234,700	50	4,117,350
1961年		協業 822,660	62	510,049
2,322,660	自家	都賣 1,500,000	102	1,530,000
	委託	—	—	—
計				8,914,982